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3
Ⅱ. 법적 근거 ····· 3
Ⅲ. 정보공개의 원칙 ····· 4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정보공개 대상기관 ····· 9
Ⅱ. 공공기관의 의무 ····· 10
Ⅲ. 정보공개심의회 ····· 24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요약 ····· 30
Ⅱ. 정보공개 청구 ····· 35
Ⅲ. 정보공개 처리 ····· 41
Ⅳ. 불복구제 방법 ····· 64

CONTENT

제4장 **원문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Ⅰ. 원문정보공개 대상 정보 기준 ····· 71
Ⅱ. 문서 분류(공개/비공개 분류기준) 가이드 ····· 78
Ⅲ.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 82

제5장 **정보공개 관련 통지 예시**

Ⅰ.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예시 ····· 109
Ⅱ. 비공개 결정 통지 예시 ····· 111
Ⅲ. 불복구제 절차 예시 ····· 119

법률 / 서식 _ 121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Q&A _ 175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의 원칙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Ⅱ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은 3년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 제4항)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법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범위·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해 법 간 충돌·모순 해소

※ 다른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민사집행법(채무불이행자 명부), 민사소송법(소송기록 등), 형사소송법(형사 재판기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공부), 의료법(의료기록) 등

정보공개법 적용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의 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결정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민원처리 방법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정보의 열람 및 발급 신청방법 등)를 안내

※ 안내방법: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별지 제4호의2)를 활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내

메 모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정보공개 대상기관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Ⅰ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 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50개, '21.1.29. 기준)**
  ※ (공공기관 지정현황 소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 -알리오 안내- 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410개, '21.6.30. 기준)**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소재) 클린아이(www.cleaneye.go.kr) - 클린아이 소개- 지방공공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유아교육법: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등
    -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 고등교육법: 대학(사립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농수산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805개, ’21.6.30. 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재) 클린아이(www.cleaneye.go.kr) – 클린아이 소개 – 지방공공기관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Ⅱ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보공개의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제6조의2)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노력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
- 공공기관은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
-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 처리지연, 위법한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 금지

3.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 (기　　타) 국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등 국민의 건강 관련 정보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 •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 (조세) 국·지방세제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 • (가스, 상하수도) 단수 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 • (전기·통신) 정전 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②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
> –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 (지방계약법) 발주계획, 입찰공고 내용, 개찰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변경 내용,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24조 제1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심사기준 등
>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 낙찰자 심사 결과,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 낙찰자 심사기준과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는 ’21. 12. 23.부터 공개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 (국가재정법)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 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 - (지방재정법)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구분	공개범위/내용 (예시)	비고
중앙	• (범위) 장·차관, 소속기관장, 실·국장 등 • (내용) 직위, 사용일자 또는 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주기) 매월 또는 분기	
지자체	• (범위) 단체장(소속기관장 포함), 의원, 과장급이상 등 • (내용) 직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주기) 매월 또는 분기	
공공기관	• (범위) 기관장, 임원, 부서장 • (내용) 직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방법, 참석대상 및 인원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일정공개에 관한 정보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관	• 법 제2조 제3호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개 시점 및 범위	• 정보공개포털에서 당일 일정을 통합 공개하고, 각 기관 누리집에서는 과거 일정을 최소 1개월 이상 공개(일간-주간-월간 단위로 표출) • 미래 일정 중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등록(최소 1주일 이상)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 현행화 • 기관 누리집 일정 등록 시점은 전일 19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당일 0시까지는 정보공개포털에 표출되도록 미리 등록
공개 내용 및 방식	• 일정의 공식 명칭, 시작 시각, 장소 정보를 공개 ※ 예시: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개막식 / 11. 22.(금) 10시 /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업무 관련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일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 • 기관 홈페이지(누리집)에 기관장 일정 공개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주요인사의 일정을 통합하여 공개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 건수 등 행정 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 '05. 7. 30. 이후 '주요 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 (시행일 '05. 7. 30.)

  ※ '05. 7. 30. 이후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 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문서 제목으로 공개(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문서 제목으로 목록 작성·비치를 갈음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 (잘못된 비공개 목록 예시) 관내 음식점 특별점검 결과보고, 을지연습 시행계획, 보안점검 일제 정비계획 등 목록(제목) 자체가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임

목록공개 예시

문서제목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생산일자	문서번호	보존기간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제작	경상북도 교육청	총무과	홍길동	2021. 11.00.	총무과 -20000	10년

단위업무	공개여부	분류체계	본문파일
정보공개 관리	공개	교육〉교육일반〉일반행정지원〉 기록관리〉정보공개및공시〉정보공개관리	필요시 청구신청 (안내문구)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방안 추진**
  - 공개 가능한 문서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
    ※ (예시) ① 외부기관 또는 대국민 시행을 위한 문서, ②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연차보고서 등), ③ 법령 제·개정 계획 문서, ④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문서
  - 비공개 사유의 엄격 적용
    ※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5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초기값 단축(자율지정 → 90일, '19.9. 적용)
  -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 평가항목에 원문공개 분야 포함
  -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 작업*을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 문서로 전환
    ※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문서 이관 전 공개 여부 재분류
  - 기관별 원문공개율 통계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공개
  -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문공개 권고

6.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정보공개시스템 등)

- **작성 단위**
  - 직제에 명시된 실(국)·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직제상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과 단위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가능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작성 방법

① 실(국)·과·팀별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

- 작성 단위별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② 기관 단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기관 담당자는 작성 단위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운영

③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작성 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변경할 경우 작성한 실(국)·과·팀과 조정

④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확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 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분류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하여 공개
-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개선 결과를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실(국)	○○과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제5호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팀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비공개 대상 정보 조사 서식 작성요령
  ① 작성단위: 실(국)·과·팀
  ② 소관사항: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③ 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④ 근　　거: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　　분	비공개 대상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2. 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그 회의의 회의록 및 관련 정보(노동위원회법 제19조)
○ 타 사용목적 금지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법률에 의한 명령상 비밀유지 또는 비공개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2.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 회의록(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작성요령
  – 각 실·과·팀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근거법령 기재
  ※ 담당자의 직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엄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1호)가 아님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예)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항 기재

예시) ①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국가안전보장)
②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방)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예시)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다중이 이용하는 청사·지하철 역사 등 시설에 대한 도면 등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 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재
  - 비공개 대상 정보량이 많을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공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성

예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①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에 대해서는 위 작성요령을 참고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잘못된 작성사례)

1. 실(국)·과 등 작성단위 미기재, 해당기관의 단위업무가 아닌 일반적 사항을 기재하는 등 대부분 기관에서 발생되는 오류

작성단위 (*작성단위가 아닌 비공개 사유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 (* 해당기관의 단위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비공개 사유를 작성)
(제6호)개인정보	-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제7호)법인·단체 경영·영업상 비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비공개 조항 적용이 잘못된 경우

- (제1호로 잘못 적용) 담당자의 직무상 주의사항, 비밀엄수 의무 등의 포괄적 규정을 정보공개법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제1호)로 잘못 적용한 사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및 제198조(준수사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성폭력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부동산공시법 제37조(성실의무 등), 감정 평가법제26조(비밀엄수),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병역공개법 제13조(비밀엄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보안유지 등),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통신비밀 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제1호

- (제5호로 잘못 적용)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또는 국가안전보장 (제2호)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감사·감독, 의사결정과정 등 비공개 사유인 제5호로 잘못 적용한 사례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잘못된 작성사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00청) - 비밀관리/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관련 사항,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관련 사항(00청)	제5호

- (제6호로 잘못 적용) 공개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비공개 사유인 제6호로 잘못 적용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내역(통계), 출장비 지급현황(00위)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00부)	제6호

- (제7호로 잘못 적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제3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영업비밀 등의 비공개 사유인 제7호로 잘못 적용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공공청사 도면 정보(00청)	제7호

3. 법령의 근거 없이 비공개 하거나 비공개 근거 조항 미기재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 회의록(00시) - 각종 위원회 회의록(00도) - 여성발전기금 선정 회의록(00도) - 각종 위원회 회의록/심의결과(00구, 00군) 등	근거없음

7.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확인 및 안내

-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 정보공개 접수 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사전공개 및 정보목록을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정보 존재의 증명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 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8.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공개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과 대상 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9.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시행령 제11조의2)

-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및 교육청은 실·국장급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운영
  - 공공기관 주관 하에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할 및 기능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정보의 사전공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 출석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지도·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소속 또는 시군구의 정보공개 문의는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기관별 규모·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10. 정보공개 교육 실시(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3조의2)

-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불복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 교육 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스스로 결정 및 교육 실시 증빙자료 마련(계획 및 결과보고, 참석자명부 등)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 요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위원장 포함 5~7명
- 외부위원: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2는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공소·교정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일반 공공기관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상향은 '21. 12. 23.부터 적용

- 위원장: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배제 대상(예시)

- 해당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 국가기관등은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 통합 설치·운영 가능

※ 준정부기관, 지방 공사·공단은 '21. 12. 23.부터 심의회 의무설치 적용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개최 및 심의 제외사유(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특히, 매뉴얼 제4장 Ⅰ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말비공개 정보(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는 심의 대상에 해당)

-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공공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의 제외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95)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심의회 미개최 시,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법 제18조 제2항)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법 제12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자문·연구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됨
-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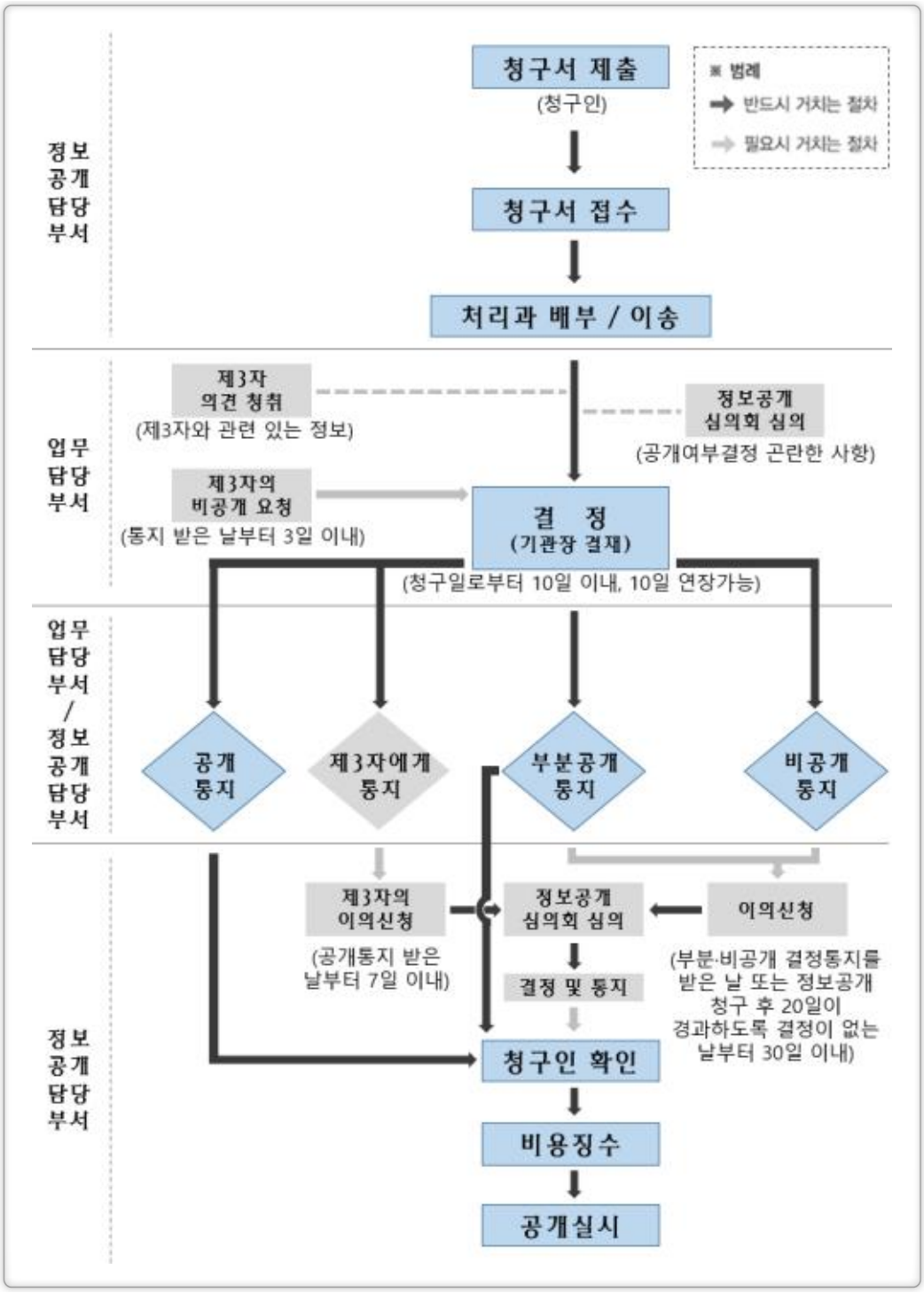
Ⅱ. 정보공개 청구

Ⅲ. 정보공개 처리

Ⅳ. 불복구제 방법



□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



Ⅰ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요약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정보공개담당부서)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직접 출석 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 구술청구: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나.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공개여부결정(업무담당부서)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의 여부의 결정), 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2. 주요내용

가. 공개여부 결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기간 산정방법: 접수일은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는 다음 날 접수된 것으로 처리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연장 사실, 사유 통지

공개여부결정(업무담당부서)

☞ 부득이한 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잇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결재 후 종결 처리 가능

  ※ 청구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문서로 해당 사실 안내 필요
- 정보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등)통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정보부존재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정보부존재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세부내역에 부존재 기재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나.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 공공기관이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

  →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 의견서 제출: **3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예: 비공개 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다.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학교의 경우 기관장 결정에 따름

☞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행정정보공표목록에 포함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참고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업무담당부서/정보공개담당부서)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 부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부분의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통지

②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 일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 지정
-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 수수료에 따라 산정
- 수수료 감면 여부 검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감면비율: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③ **공개방법 및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추가 지참)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사본, 복제물의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송부 가능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

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

※ 정보의 어떤 부분이 법의,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정보공개담당부서)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
→ 위원 중 2/3은(위원장 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나. 위원수: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1인 포함)

다.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 2회 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아님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불복구제신청(청구인)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2. 주요내용

☞ 불복구제 신청자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불복구제신청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방법: 문서로 신청**
- 기재사항: 신청인, 정보공개(비공개)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②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③ **공공기관(학교)의 일**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7일 이내 연장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학교는 학교장 결정)
- 기각, 각하 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행정심판

①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②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

→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시: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

①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Ⅱ 정보공개 청구

1.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됨(대법원 2010두18918)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6두3049)
- 해당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통계작성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 방송용 가 편집본 테이프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법령 해석례 12-0188)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음(법령 해석례 16-0629)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대법원 2009두6001)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2007구합31478)
  ※ 공개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에서 생산됐으나, 직무상 접수 등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경우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후 결정)

- 타 기관 생산문서를 보유·관리하던 중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다시 제출받아 공개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서울행법 2006구합16878)
- 검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CD, CCTV 영상정보, 민원인과의 통화 녹취록, 방송용 테이프 등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대법원 2002두2918)

-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URL 등)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음
-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제3항, '21.12.23. 시행)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법 제10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별지 제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기타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청구 방법을 의미함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시행령 제6조 제2항)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법 제11조 제4항)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시행령 제6조 제2항)**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큰 부서, 청구 처리건이 많은 부서, 청구서상에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등이 주관부서가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소관 기관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생산·접수 등)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관련 자료를 모두 이관한 경우에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 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잘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업무를 시행한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정보는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검사기관인 ○○기관에 이송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시 ○구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주관자료이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정보는 ○○시 소관 업무입니다.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 기관을 안내

※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됨(법령 해석례 10-0251)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법 제11조 제5항)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陳情)·질의 등으로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 판단 근거, 이유,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요청 등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민원으로 판단하여 처리

6.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
  - 직접 제출 및 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 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Ⅲ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원칙)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예외)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함께 검토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 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할 때: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할 때: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할 때: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 관련 각종 기간의 계산 방법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구 분	방 법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1조)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기간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제18조 제3항)

▸ **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산(민법 적용): 첫날 미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법 제18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기간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법 제21조 제2항)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실시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법 제21조 제3항)

▸ **민원처리법 제19조 준용: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 민원처리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 공휴일, 토요일 산입

구 분	방 법
공개 실시일 지정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통지, 최초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의 정보제공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제공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
내부 종결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가능(시행령 제12조 제4항)

2. 제3자(이해관계인)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제3자의 비공개 요청(법 제21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대상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한 등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 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필요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or [별지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의견청취 가능

- **정보 공개의 여부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해당 공공기관이 결정해야 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법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결정통지
- 공개(부분공개) 결정: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 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호 및 개별 법령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 동의 시 일부 가공 공개 가능)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공개결정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

-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4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대법원 2003두8050)

※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8050)

• 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음(중앙행심 2016-13423)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가능. 단,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5두15694)

•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결정 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 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 진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3조 제4항)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URL) 및 게시 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로 볼 수 없음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이 열람되지 않도록 유의
  - 1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회 열람이 원칙이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 열람 가능, 이 경우에는 총 열람 시간을 계산하여 수수료 산정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 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법 제15조)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 공개시스템 등)이나 매체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공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 상(법 제16조)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오프라인 신청건)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 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 방법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법 제14조)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정보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으므로,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부분공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관련 판례

- 민사소송 판결문 공개청구 관련, 이름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청주지법 2013구합1923)

6. 정보부존재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받은 정보의 검색가능 여부
  ※ '11년도 ○○ 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 "○○ 재단법인", "감사" 등을 정보목록에서 검색
  ※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
-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 시기 도래 여부
  ※ 매 ○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생산 前 청구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 여부
  ※ ○○경찰서가 ○○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 추가 절차 필요(정보부존재)

☞ 기관의 '생산·접수' 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 여부로 판단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 사항 등을 제시
  ※ '상당한 개연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받은 정보와 기관의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 '상당한 개연성' 인정 사례

- (행심 2004) 법무부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 처리기간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 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 (행심 2009)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

※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사례

-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 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 해당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법에 따른 △△청 소관 사무를 타 부처에 청구한 경우
  ※ 지자체 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중앙행정기관에 청구한 경우
- 해당 기관이 청구받은 정보를 생산·접수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경찰서에서 ○○지검으로 모두 이관한 사건 내용을 경찰서에 청구한 경우
  ※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해당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법령해석례 10-0251)
  ※ 청구인이 00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기관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전제로 한 것(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549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서울행법 2006구합20716)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존재 사유인 취합에 해당되지 않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여부 판단)
  -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뉘어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 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서별 관리방식 그대로 취합·제공

  ※ ○○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table>
<tr><th>구분</th><th>형태 변환</th><th>추출</th><th>조합</th></tr>
<tr><td rowspan="2">非전자</td><td rowspan="2">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부존재)</td><td>(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td><td>(기존)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td></tr>
<tr><td colspan="2">(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td></tr>
<tr><td>전자</td><td>非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無(부존재)</td><td colspan="2">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有(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부존재)</td></tr>
</table>

〈 '형태 변환'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 ○○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 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정보공개 여부 판단)
  - 非전자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에 해당
    ※ ○○관련 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부존재)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
  -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변환 하여 공개 가능(정보공개 여부 판단)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 가능
    ※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 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형태의 OO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부존재)

〈 '추출'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정보의 '추출'
  -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건축 인허가 관련 건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장 보유 여부별로 통계 추출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 ○○공사가 관리하는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 · 대학별, 소지 자격증별 추출은 가공
- 전자적 정보의 '추출'(서울행법 2006구합47759)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
    ※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 · 편집이 곤란하므로 가공
    ※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현 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를 추출하는 것은 가공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사례

-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00. 11. 중앙심판위)
- 대입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2009두6001)

〈 '조합' 여부의 판단기준 〉

- 非 전자 정보의 '조합'
  - 기관의 旣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제출일별로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별로 분류하는 것은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의 '조합'
  -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에 해당
    ※ 日 단위로 공개하는 조선왕조실록을 年 단위로 공개하려면 별도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공
    ※ 동별 관리하는 범죄 발생률을 초·중등학교 특정반경 내의 발생률로 공개하는 것은 가공

〈 유의사항 〉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 여부를 판단
-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 가능
  -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 (종이문서) ○○대학교에 07년~10년도 입학원서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통계(성별, 지역별, 나이별 등)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가공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데이터인 입학원서는 존재하므로 입학원서 자체를 부분공개(개인정보 등은 제외)
-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보존기간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 (보존기간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기간 경과 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 (폐기) 청구받은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보존기간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 유의사항 〉

- 보존기간 內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 고의·과실 등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정보의 폐기, 국가기록원 등으로의 이관 등은 공공기관이 입증
- 청구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 처리예시 〉

> 귀하께서 청구하신 '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으로, '07년에 폐기되어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00두9212)
- 청구 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정보부존재)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

•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청구인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전 부서와 관련된 42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다음날 2개 부서와 관련된 15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청구내용 및 그 분량에 비추어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유의사항 〉

- 민원처리법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영 제24조)

〈 관련 판례 〉

-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대법원 2007두2555)
-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2005누25082)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기관 내 각 부서는 소관업무 관련 정보부존재 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 여부를 판단·결정

- 정보부존재 사유 파악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정보부존재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잘된 사례〉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부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요청한 ○○현황의 경우 우리부가 용도별 자료 구분을 시행하지 않아 자료 추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보완하여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서류는 생산일('75.5.26)로부터 보존기간(30년)이 경과되어 우리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사례〉
-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체의 사업비 내역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된 문서는 부존재함을 통보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청구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부존재 정보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결정 통지서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7. 진정·질의 처리(법 제11조 제5항 제2호)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처리기간: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건의민원 14일 이내

※ 예: 귀하께서 제출하신 ○○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 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시행령 제15조)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반드시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

-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정문, 후견인증명서 등

※ 임의대리인 예시: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한 불인정 사례: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법 제17조 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국가기관 등: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의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함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매체 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 예시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 사본 수수료의 1/2
- 전자파일이 아닌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지움 작업을 하는 경우: 사본 수수료
- 전자파일을 전자파일로 단순 변환하는 경우(예, 캐드파일→PDF): 무료
- 전자파일을 출력 후 지움 작업하고 다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경우(예, PDF를 출력하여 지움 작업 후 다시 전자파일로 변환): 사본 수수료
- 전자파일 상태에서 지움 작업하고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예, 엑셀자료 일부를 지우고 엑셀자료로 제공): 무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

- 감면비율: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시행령 제17조 제5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10. 동일·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보공개 오·남용 판단기준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음(대법원 2014두9349)
- 국민의 알권리 또한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에서 보장될 수 있음(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2018-13)

  ※ 청구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이 워낙 방대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관련 청구는 우리 모든 법체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1명이 매일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1명이 많은 기관에 동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하루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한 건의 청구에 많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정만으로 오·남용으로 볼 수는 없음. 즉,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함(인천지법 2015구합51228)
-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고소와 진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0-18608)

동일·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법 제11조의2 제1항)

〈 동일 정보 〉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청구
  - 동일의 기준은 사회 일반 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종전의 공개 내용과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변동사항이 없는 식품제조업체·숙박시설 등 특정지역의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

  ※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의 인쇄비, 신고 포상금 등 예산집행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 결정해야 함

※ 새로 추가된 사항이더라도 기존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봄

〈 반복 청구 〉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사유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동일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청구에 해당 안 됨

※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질의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보부존재 또는 민원답변 처리 후 동일 내용을 계속 청구하는 경우 반복 청구로 봄

※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 동일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동일 청구로 종결 처리 할 수 없고 각각 해당 기관의 정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 청구가 아님

〈 정당한 사유 기준 〉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판단
  -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 처리절차 〉

- 내부결재 후 종결 처리 및 청구인 통지

※ 오프라인 신청건의 경우 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Ⅳ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제기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문서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법 제18조 제4항)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구 분	주 요 내 용
인 용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부분인용	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기 각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각 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및 법 제21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기관은 행정심판법 확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문의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집행정지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 관련 판례 〉

-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8두13101)

메 모

제4장

원문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Ⅰ. 원문정보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 문서 분류(공개/비공개 분류기준) 가이드

Ⅲ.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Ⅰ 원문정보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근거법령(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원문정보(공문)을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3. 원문정보공개 개요

- **원문정보공개 대상**
  - 도교육청: 국장급(3급 상당)이상 결재 문서
  -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재문서
  - 직속기관: 직속기관장 결재문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학교장 결재문서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장 결재 및 초등학교 문서로 생산되므로 원문정보공개 대상
- **원문정보공개 방법**
  - 2015.3.1. 이후 생산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에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문서 제외)

- 일단위로 공개하되 7일 지연 공개(지연공개 기간 동안 문서공개여부 재분류)
  ※ 예: 2020.3.1. 공개로 생산된 문서는 2020.3.8.부터 공개
- 정보목록(문서제목)은 정보공개포털에 일단위로 공개(지연공개 아님)

4.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개념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의료보험증 번호, 신용카드번호, 각종 단체가입 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생년월일, 계좌번호,** 자격번호, 군번, 사번 등
  - 경제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정보, 부채 등
  - 사회정보: 학업, 성적, 병역, 직업, 자격, 교육, 근로 등
  - 통신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IP, 로그, 문자내역, 화상정보
  - 민감정보: 사상, 신념, 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 의료정보 등
  - 교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유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조회되거나, 다운받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관 및 담당자의 민·형사상의 책임 가능성 상존

>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 이하생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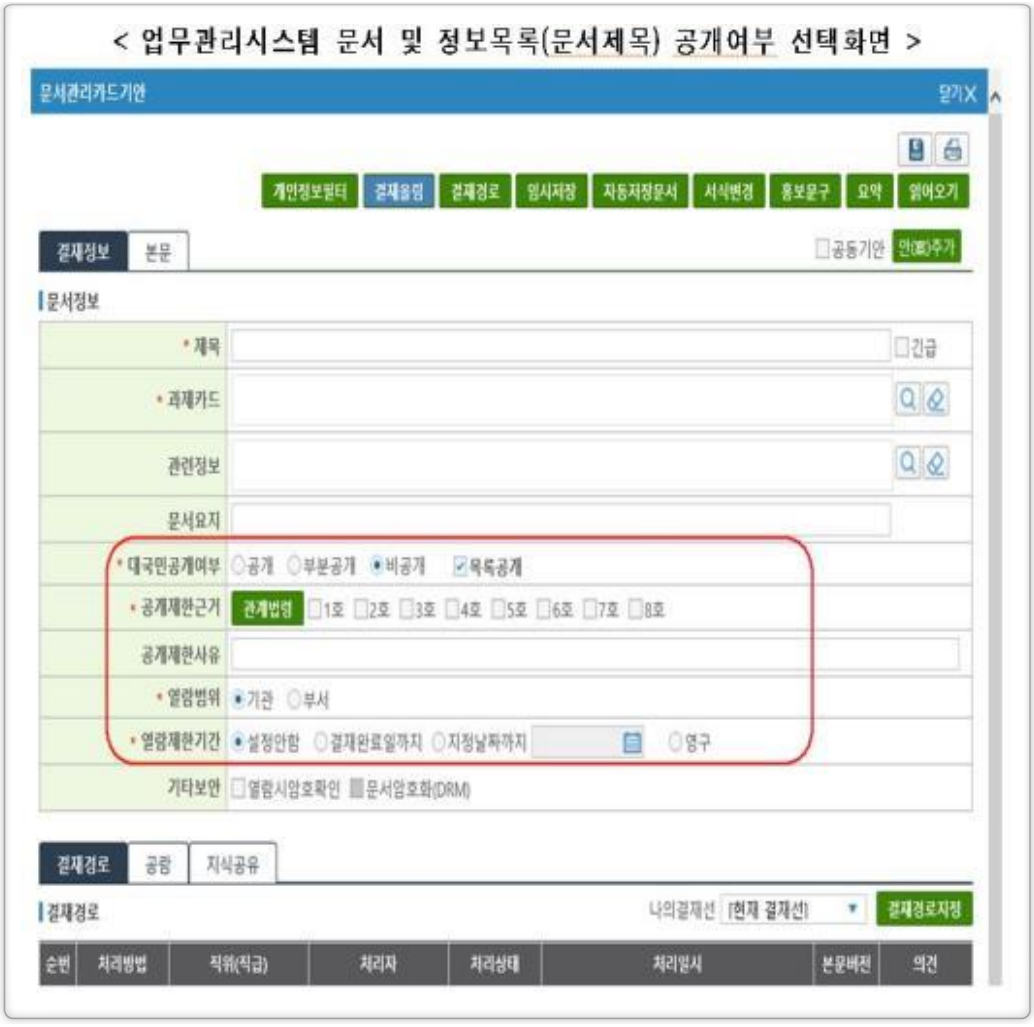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

- 정보목록(문서제목)에 개인정보 포함
- 문서본문에 개인정보 포함
- 첨부파일명 또는 첨부파일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

문서 및 정보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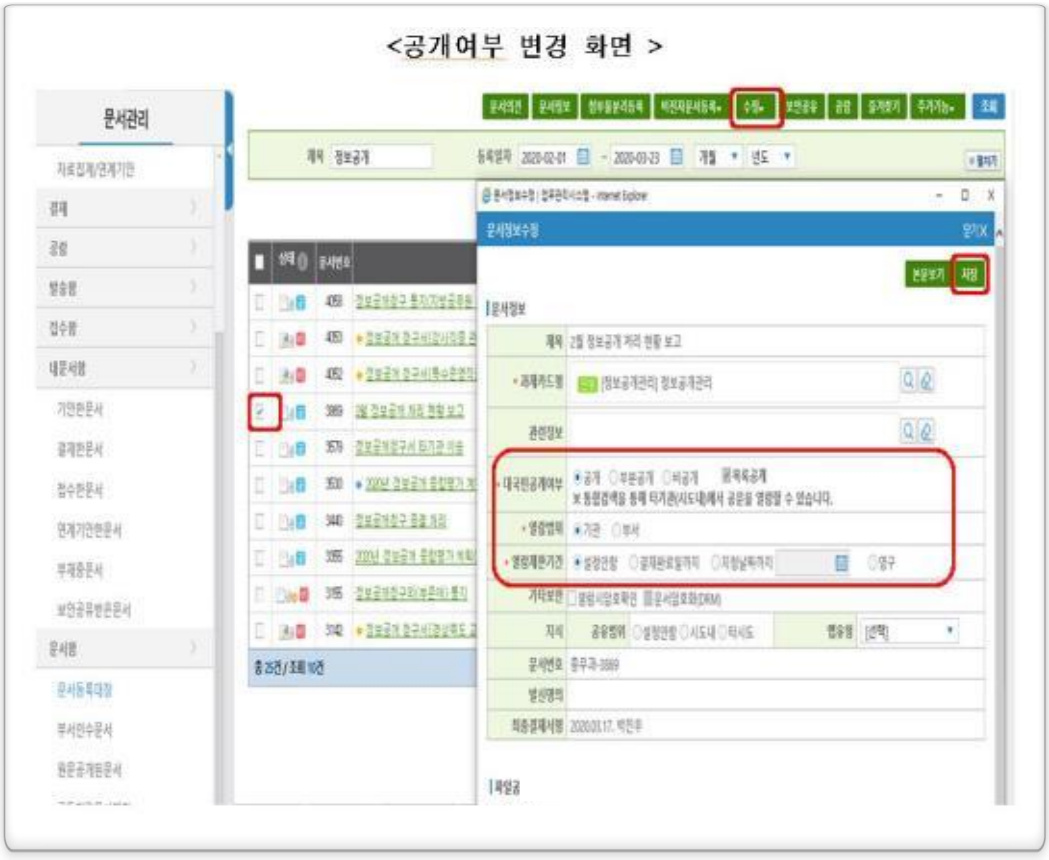
○ 문서 및 정보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문서분류 ⇨	· 문서 작성 시 공개여부 분류철저(강조사항) - **공개: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문서가 기안문, 첨부물에 없는 경우** - **부분공개: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문서가 기안문에 없고 첨부물에 있는 경우** - **비공개: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문서가 기안문, 첨부물에 있는 경우** - 특히,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한글 문서와, PDF(스캔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필터링이 안 되므로 각별히 주의
문서제목(정보목록) 작성 ⇨	· **문서제목, 본문, 첨부물, 첨부물 파일명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성명이 포함되는 경우 사생활 노출 및 침해 사례 발생 - 필요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홍○○', '홍*동' 등으로 기입
문서 제목의 공개여부 선택 ⇨	· 목록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문서 전체 '목록공개'가 원칙임. - **목록공개 체크를 해제하면 안됨.** ※ 정보공개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비공개 문서의 정보목록도 공개하도록 규정



결재완료된 문서의 문서공개 여부 변경

- 문서등록대장 → 해당문서 검색 → 문서선택 후 수정 → 변경 저장
- 문서공개여부 변경 후 익일 정보공개포털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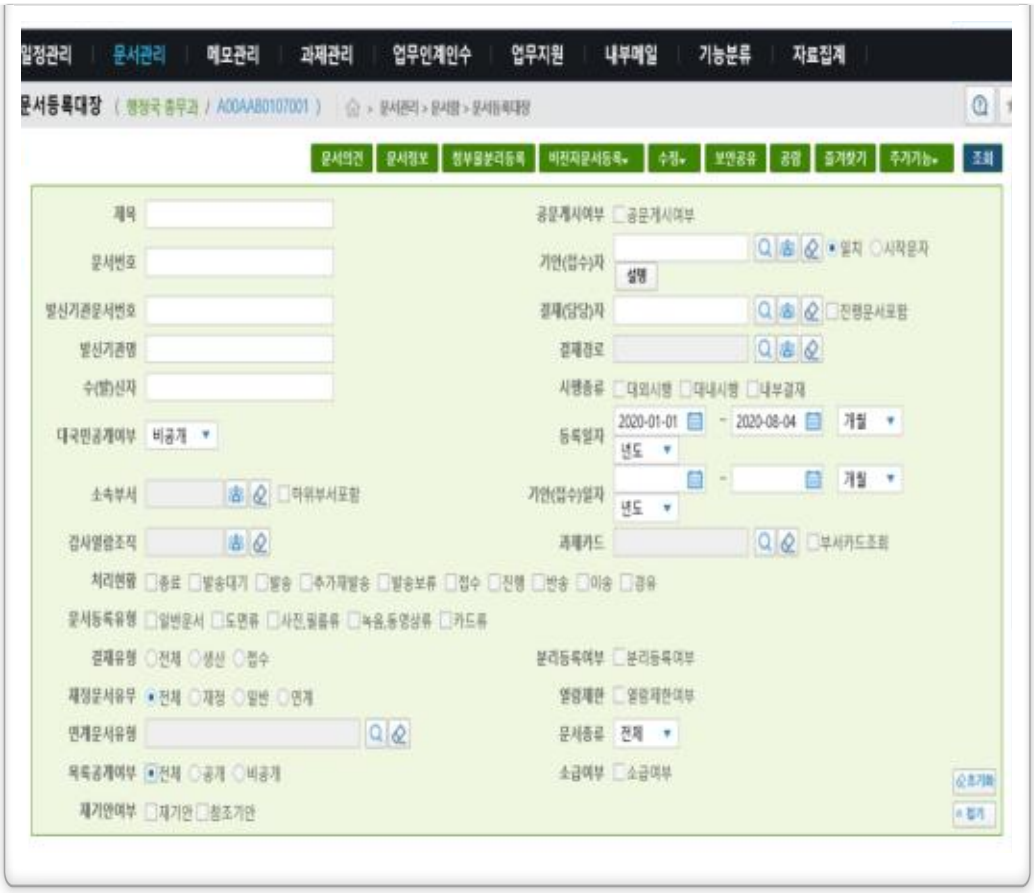
- **원문정보공개 7일 지연 공개기간 내에 문서공개 여부 재확인·변경**

5. 기관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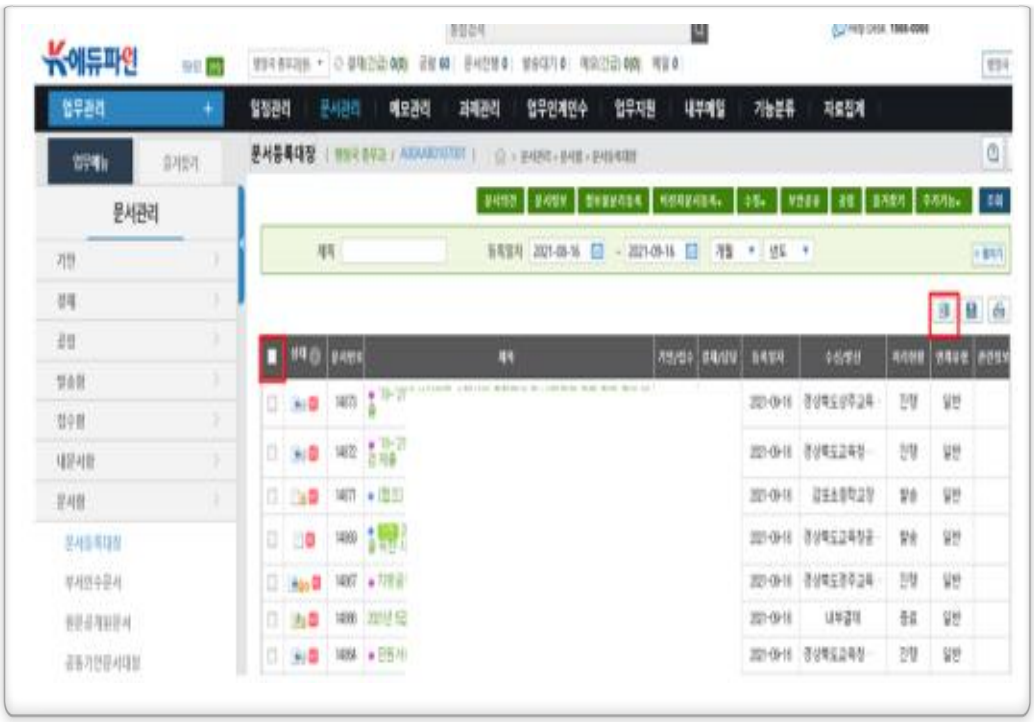
●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직원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서작성 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원문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유의사항 전파
- 기관자체 월별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담당자 회원가입 후 해당 기관(부서, 학교, 직속기관)의 원문내역 조회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등록대장 검색
  - 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 시스템 공무원 창구에 로그인 하여 원문정보관리→원문관리에서 부서, 기관(학교)에서 비공개 요청한 원문을 조회 후 기관 연락 ⇒기관찾기에서 교육지원청 산하기관(학교)등을 검색, 날짜 설정 후 조회

문서분류(부분공개/비공개⇒공개) 수정 방법



1. 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선택
2. 목록공개여부: 전체 선택
3. 기관장 성명: 검색 후 조회
4. 등록일자: 추출하고 싶은 기간 설정



5. 제목 앞쪽 체크박스 선택

6. 엑셀 목록 다운로드(엑셀 목록은 2개월만 다운로드 됨)

7. 담당자(기안자) 별로 문서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 부합되는 문서는 제외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

Ⅱ 문서 분류(공개/비공개 분류기준) 가이드

1. 목적

-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서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
- **개인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등의 공개/비공개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기관별 · 개인별 정보공개의 일관성을 유지**

2. 주요 쟁점별 공개기준

- **공개/비공개 분류 시 고려사항**
  - 기관에서는 문서 생산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여부를 검토 후 공개/비공개를 결정
  - 비공개 분류 원문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비공개 시 청구인은 불복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신청할 수 있음
  - 비공개자료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선택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임**

〈사례1〉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 공개대상 정보로 성명·직위만 명시되었으나,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은 위 성명·직위에 준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정보에 해당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처리에 있어서도 공개

〈사례2〉 교육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 ⇒ 공개

☞ 공무원의 교육 참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정한 공무원 직무수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유사사례: 출장, 행사지원, 초과근무 등

〈사례3〉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 비공개

☞ 연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함

* 유사사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 대상임

〈사례〉 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직위 ⇒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마목에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이며,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이에 준하여 공개 가능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임

〈사례1〉 본인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8조의2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 정보(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 ⇒ 공개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음

〈사례2〉 국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자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국적회복허가 고시 관보 게재 의뢰 문서 ⇒ 비공개

☞ 위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임

〈사례1〉 문서 제목에 민원인 성명을 포함 ⇒ 성명을 포함하면 안 됨

☞ 비공개 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목록이 정보공개법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성명을 문서 제목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성명이 포함된 문서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도 안 됨.

〈사례2〉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부결재 문서 ⇒ 비공개

☞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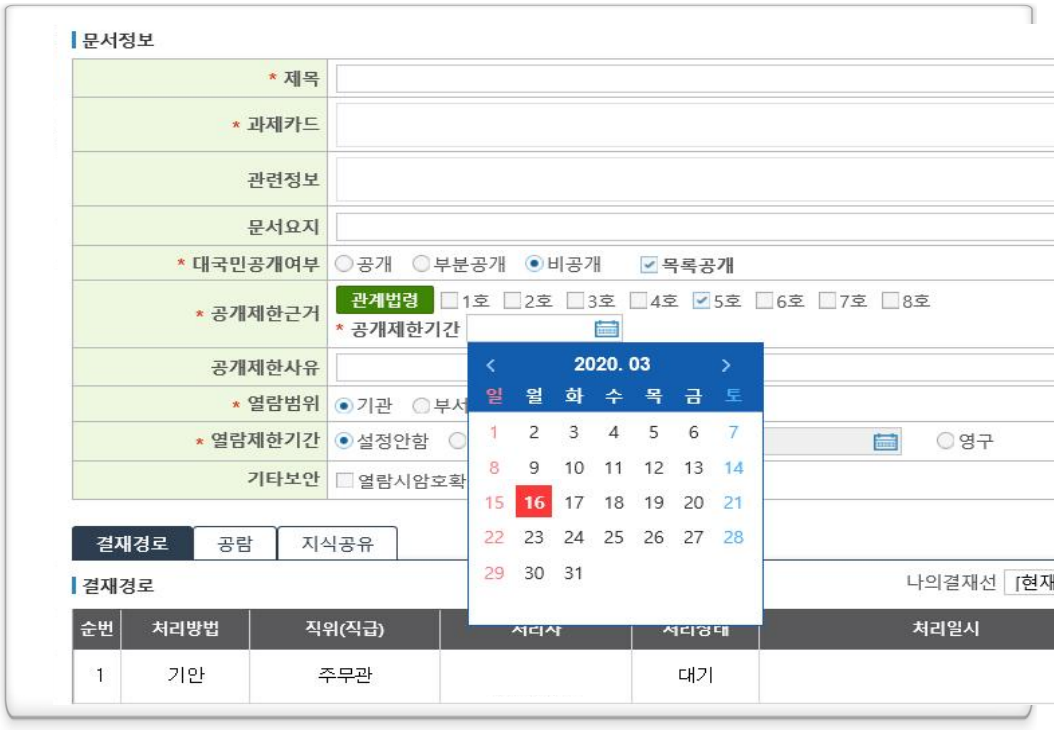
〈사례3〉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개(법제처)

☞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4〉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대전지법)

☞ 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 생산 시 '공개(열람)시점' 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



※ 문서 작성 시 비공개 5호 설정: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기간(공개 제한기간)이 종료된 문서는 자동으로 "공개"됨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현장점검표 서식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현장점검표

학교: oooo고등학교 점검일: 2021. 00. 00.(0요일)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우수	양호	미흡
정보공개	부존재 및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 처리 대장(유, 무)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여부(진정·질의, 제3자의견 등)			
	종결처리. 정보부존재, 즉시공개 결재(유, 무)			
	정보공개 서식 비치, 관련법령 이해(유, 무)			
	타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 처리방법 숙지여부			
	각종 회의 시 정보공개 교육(유, 무)			
원문공개	원문정보공개의 이해(유, 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목록공개 이해(유, 무)			
	원문정보 수정 방법 이해(유, 무)			
	각종 회의 시 원문정보 교육(유, 무)			
	각종 회의 시 개인정보 교육(유, 무)			
	공문 기안 시 개인정보 입력을 줄이는 노력(유, 무)			
합계				
건의사항				

업 무 담 당 자: (서명)

점 검 자: (서명)

Ⅲ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자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 2003두8395)

  ※ 검찰보존사무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포괄적 규정: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형법 제12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중앙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보안유지 등),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국가 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및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등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은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임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회의의 비공개' 규정으로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제1호 사유에 해당)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등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 정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임. 대법원 2010두2913)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등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 해소, 그리고 개별 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 2002구합33943)

비공개 유형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침 및 000 북한 이탈주민 관련 문서 등 (서울행법 2013구합56140)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1두3358)

서울시의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측량원도)

행정심판 재결례(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

☞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함(중앙행심 2011-19000)

비공개 유형

- 수사 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개인별 보상금액 등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4.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서울행법 2002구합 24499)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법원 2010두24913)
-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09두19021)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해당됨(헌법재판소 94헌마60, 대법원 2002두1342)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서울행법 98구3692)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대법원 2010두7048)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대법원 2003두12707)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고소인이 청구한 사건 관련 자료: 부분공개(대법원 2010두7048)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5.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이에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8827)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 유형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해당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00두6114)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서술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무기, 화약물 처리업소의 위치 등),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도 검토 필요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 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등)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청구인 및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비공개(보건복지부 09-11338)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 공개/비공개 (법령 해석례 06-0128)

  ※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사법시험 2차 답안지: 공개(대법원 2000두6114)

  ※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1구15787)

  ※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 세무사 2차 시험(서술형) 세부 문항별 점수: 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9- 24791)

  ※ 동 정보만으로는 각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항목별 취득 점수를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 공개/ 비공개 (춘천지법 2004구합1207)

  ※ ①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② 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비공개, ③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 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 (대법원 2002두12946)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비공개 (대구지법 2006구합820)

  ※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 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비공개

-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발언자 인적사항 등: 공개/비공개 (수원지법 2008구합6364)

  ※ ① 회의내용은 공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하여 투명성, 정당성, 공공성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 회의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②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공개된다면 심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지 여부: 해당됨 (대법원 2002두12946)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 공개/비공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1657)

※ ①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 고충민원 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 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개, ②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 00도 임도 건설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공개 (중앙행심 2015-16577)

※ 타당성 평가 위원은 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등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바, 민간위촉 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점, 민간위촉 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

-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대법원 2007두9877)

※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 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비공개(중앙행심 2011-25236)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 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 내부감찰 조사과정에서 담당자들로부터 받은 사건 경위서: 비공개 (대법원 2010두18758)
  ※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가 타당
-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고 우선 시공분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 공개(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님) : 비공개(대법원 2013두20301)
- 시험문제가 단답형과 짧은 서술형으로 답이 명확하고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여지가 적은 경우에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공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 다면평가의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9구합 12656)
-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 비공개(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단, 본인의 명부 순위나 점수 등은 공개 가능
-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대법원 2010두14268)
  ※ 수기 작성 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것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로 비공개
-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 부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 이 사건 정보 전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 비공개 (서울행법 2015구합83061)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에게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인 점, 공개 이후에는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집필·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드는 점, 교육부장관이 예정하고 있는 공개 시점보다 수개월 먼저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에 비하여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함

-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가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2016-6379)

  ※ 감찰업무 특성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당자사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피감찰자들이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찰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2다 49933)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 2007-14671, 2007-19790)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조약·협정 조인자명 등을 들 수 있음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법령 해석례 06-0131)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없으므로 공개
- 외부위원 명단: 공개(국무총리 09-04617)
  ※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공개(행정안전부 09-12524)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노동부 09-17310)
- 의결서와 회의록: 공개(국무총리 09-03666)
  ※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 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필요성 없음(서울행법 2009구합4739)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대법원 2001두 6425)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대전고등법원 2001누2162)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에 포함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비공개(서울고법 2001누17274)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에 포함된 지출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 공개(서울고법 2001누17247)
- 징계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 공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시 징계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음
-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하였으나, 제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보자에 관한 정보: 공개(연락처는 비공개)(서울행법 2008구합26466)
- 성과급 순위명부: 비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임
- 보조금 지급내역 중 개인의 성명: 비공개(대법원 2009두14224)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공개 (법령 해석례 06-0131)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비공개 (행정 자치부 05-17455)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 05-16330)
-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공개
- 출장비 내역: 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3445)

  ※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부분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 06-14443)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성명, 수당지급 총 시간, 총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건에서, 이 정보는 원시적으로 피청구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공개로 인하여 실현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익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직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배제된 총 시간 및 액수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임(지급대상자 성명은 비공개)
-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 공개(강원도행정심판위 2020-229)

  ※ 초과근무에 관한 정보공개가 사생활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초과근무일, 초과근무시간은 물론 초과근무자의 이름, 직급, 근무내역도 공개하여야 함

-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천대상자 명단 및 응시자 체력검정기록: 명단(비공개), 기록(부분공개)(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338)
- 국민이 00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개인정보 제외 하고 부분공개(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개(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9463)
- 업무추진비로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비공개(창원지법 2016구합832)

  ※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

-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콜센터 민원접수 통화녹음 내용: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2016-15350)

  ※ 이 사건 정보는 익명의 신고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120 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할 때의 통화녹음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신고자와 상담사의 음성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청구인이 이사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하여 형사상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7.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정부법무공단 2012-440)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받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
-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원칙적 공개(법제처 11-0395)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 내역서', '청소용역계약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률 관련 자료': 공개(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059)
- 집행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공개(법령 해석례 06-0037)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공개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다만, 출자자 및 출자비율, 출자금액 등 컨소시엄 구성내용, 설계정보, 총민간투자비, 상환계획, 사업수익률 등 재무모델 등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 정보: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 공개(인천지법 2018구합52628)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됨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례

- ○○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내역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07824)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비공개(중앙행정심판 위원회 2013-06580)
-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과 협의결과: 공개(환경부 2005-10233)
- 국유림 주변의 사유림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우려 등으로 전국 모든 국유림의 필지별 재산명세 정보: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09112)
-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00지구 택지조성원가·택지분양가·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직접공사비 관련자료 일체, 건축비 산출내역 등: 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02297)

제5장

정보공개 관련 통지 예시

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예시

Ⅱ. 비공개 결정 통지 예시

Ⅲ. 불복구제 절차 예시



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예시

1. 공개 결정 통지

공개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 접근경로) 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 합니다. - 정보소재: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 통지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부 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비공개 결정 통지 예시

1. 비공개 결정 통지(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사유를 기재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③ 「국회법」 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 용 및 사 유	1. 내용: OOO의 증여세 과세 관련 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 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총기허가·위탁관리 현황 정보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 구경별·종류별·목적별 허가 및 폐기현황 및 위탁처, 위탁되고 있는 총기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수용동태기록부(문제수용자)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⑦ 보조금·융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OO부처의 승진심사과정이 담긴 심사회의록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특정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청 구 내 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용지매수계약서 ② 설계단가표 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비 공 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불복구제 절차 예시

1. 이의신청 결정 통지(각하, 기각)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결 정 내 용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개 결정에 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결 정 내 용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구체적 기각 사유)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접 수 번 호	OOOOOOO	접 수 일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연 장 사 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결정기간	OO.OO.OO		

법률 /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2호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별지 제3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3호의2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별지 제4호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의2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별지 제4호의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6호	제3자 의견 청취서
별지 제6호의2	기피신청서
별지 제7호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	정보공개 위임장
별지 제9호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11호	이의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의2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 제12호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제1장 총칙 〈개정 2013. 8.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2021. 12. 23.]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20. 12. 22.]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 8.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 8. 6.]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본조신설 2020. 12. 22.]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2021. 12. 23.]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 ·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 8. 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 8. 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 ·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 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8. 6.]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본조신설 2020. 12. 22.]

부칙 〈제17690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3조제5항, 제18조제2항 단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및 개선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6. 22.〉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21. 6. 22.]

[시행일: 2021. 12. 23.]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제5조(정보 목록의 작성·비치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 11. 13.]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시행일: 2021. 12. 23.]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 5. 28.]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3.〉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 ·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 ·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14. 5. 28.]

[시행일: 2021. 12. 23.]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 5. 28.]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전문개정 2014. 5. 28.]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전문개정 2014. 5. 28.]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28조(자료제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5. 28.]

부칙 〈제31801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가목 · 나목,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5. 28.]

부칙 〈제262호, 2021. 6. 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21.12.23.부터 1GB마다 800원으로 수수료 변경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 · 시청 [ ]사본 · 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 · 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 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접수일 및 접수번호	
청구정보 내용	
이송기관, 이송일자	
이송 사유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	공개 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 · 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 · 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23.〉

제3자 의견 청취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table>
<tr><td colspan="3">접수번호</td><td colspan="3">접수일</td></tr>
<tr><td rowspan="2">청구인</td><td colspan="5">성명</td></tr>
<tr><td colspan="5">주소</td></tr>
<tr><td>정보 내용</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 일시</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 내용</td><td colspan="5"></td></tr>
<tr><td>그 밖의 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td><td colspan="2">직급</td><td colspan="2">성명</td><td>서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8">구술자(제3자)</td><td rowspan="4">기관인
경우</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직급</td><td colspan="2"></td></tr>
<tr><td>담당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일반인인
경우</td><td>성명</td><td colspan="2"></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6. 23.〉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 열람 · 시청	[ ] 사본 · 출력물	[ ]전자파일	[ ] 복제 · 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 ]개최 [ ] 미개최 (사유:)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28〉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 번호	이의 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1쪽)

1. 정보공개창구 설치 현황

구분	설치 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가. 총 괄

구분	처리 현황			
	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계					
본청					
소속 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 건수	공개방법						수령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본청													
소속 기관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라. 공개 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청					
소속 기관별					

3. 처리 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공개 방법	

※ 정보공개 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 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계									
본 청									
소속 기관별									

메 모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Q&A

Ⅰ. 정보공개제도 일반 Q&A
Ⅱ. 정보공개 대상기관 Q&A
Ⅲ.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Q&A
Ⅳ. 원문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Q&A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Q&A

정보공개제도 일반

00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 181
00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 181

정보공개 대상기관

003.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 ····· 182
004.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를 청구한 경우 ····· 182
005. 정보목록의 공개 구분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183
006.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란 ····· 183
007.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 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 183
008.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 184
009.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 184
010.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185
01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 185
012.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 ····· 185
013.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 186
014.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회의록 공개 ····· 186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015.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 187
016.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 187
017.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 188
018. 민원상담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 188
019. 결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89
020.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189
021.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 190
022.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 190
023. 정보공개 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 191
024.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 191
025.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192
026. 정보공개청구 기관 이송과 부존재 처리 ····· 192
027.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193
028. 민원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193
029.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194
030. 정보의 한시적 비공개 ····· 194
031.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 195
032.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청구인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 195
033.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실시일 ····· 196
03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시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7
035.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 ····· 197
036.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 198
037. 문서 작성 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 198
038.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접수 및 민원답변 리스트 정보공개청구 ····· 198

039.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199
04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 199
041. 출퇴근 시간 등 정보공개청구 ····· 199
042. 공직자 메일에서 메일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 199
043.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 200
044.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계산 ····· 201
045.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 201
046.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시 우편요금도 감면 대상인지 ····· 201
047. 수수료 정산 시기 ····· 202
048. 정보공개 일시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02
049.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 202
050. 사본 첫장 수수료 계산 등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 203
051.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 ····· 203
052.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3
053.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 204
054. 이의신청 기간(30일)의 계산 ····· 204
055.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건이 다른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205

원문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Q&A

056.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 206
057.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의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보공개청구 ····· 206
058.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정보공개청구 ····· 207
059.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점수 정보공개청구 ····· 207
060.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208
061.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 208
062.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 209
063.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정보공개청구 ····· 209
06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 210
065.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 210

066.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 210
067.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 211
068.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청구 ····· 211
069.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 212
070.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 213
071.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 213
072.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 213
0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 214
074.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14
075.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15
076.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 215
077.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 216
078.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 216
079.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 216
08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 ····· 217
081.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18
082.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218
083.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 219
084.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 219
085. 건축물 등의 도면 정보공개청구 ····· 220
086.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정보공개청구 ····· 220
087.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청구 ····· 221
088.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221
089.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 222
090.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의 범위 ····· 222
091. 단체협약 정보 공개 가능 여부 ····· 223
092.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 224

정보공개제도 일반 Q&A

Q 001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정보공개청구

A.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열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 00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법령 해석례 12-0195)

A.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Q&A

Q 003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

A.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A. 사전에 공개된 행정정보의 게시 기간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04 사전 공개한 행정정보를 청구한 경우

A.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인터넷 주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중앙행심 2013-07091)

※ (관련판례)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음(대법원 2008두13101)

005 정보목록의 공개 구분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A.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 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결정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06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란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한 비공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은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공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부 기준을 주기적(3년마다)으로 점검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007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법령 해석례 10-0082)

A. 공공기관은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부 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A.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 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A.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종전에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Q 008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A.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준을 근거로 청구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009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는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출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010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A.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추95)

A.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Q 01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A.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 2001추95)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 012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

A.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 미설치 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013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A.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를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A. 이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014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및 회의록 공개

A.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또한,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도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별 발언내용 등이 알려지면 공정한 심의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성명을 가리고 부분공개 가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Q&A

Q015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A.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 및 이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를 의미합니다.

※ 이메일을 통해 민원처리 경위 자료를 송부해 준 경우, 해당 자료도 정보에 해당(대구지법 2010구합3833)

Q016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A.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6001)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두12707)

A.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A. 따라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5729)

Q17 콜센터 등의 녹음파일 정보공개청구

A. 시청 콜센터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녹음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 및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에 직무상 응대한 직원의 음성 외에 제3자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할 것입니다.

Q18 민원상담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A. 녹취파일에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음성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A.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한 경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도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녹취 내용 중에 비업무적인 내용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통화한 녹취파일은 해당 통화 내용 등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 우려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또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구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019 결재 시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각종 시스템 내에 저장된 결재 시간 등도 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문서의 결재 시간은 공개 가능할 것입니다.

A. 그러나, 시스템을 통해 결재 시간 등을 추출하는 것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여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020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A.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021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법령 해석례 07-0376)

A.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022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A.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A.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지방의회의원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5무423)

Q023 정보공개 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A. 국민 누구나 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때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A. 다만,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청구시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 위임받아 정보를 교부받는 경우나 공개 시 위임 받는 경우, 그 위임의 시점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청구인이 확인된다면 청구할 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024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A.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 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A.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025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A.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A.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 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해당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026 정보공개청구 기관 이송과 부존재 처리

A.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한 후, 정보부존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027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A.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공개 결정이 아닌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할 것인바,

A. 이 경우에도 역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민원으로 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28 민원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법령 해석례 05-0067)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 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A.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절차가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Q 029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정보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A.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A. 위 민원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생년월일 등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민원서류 보완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30 정보의 한시적 비공개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해당 정보 생산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A.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Q 031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

A.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제3자 통지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합니다.
※ 통지서의 송달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름

Q 032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청구인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A.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건물번호 등 상세주소 제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 청구인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 서식인 문서로 해야 합니다.

A. 청구인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공익신고, 민원, 고발 등을 한 경우와 같이 청구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Q 033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실시일

A.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과 관련된 절차 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A.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결정일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령 해석례 06-0058)

A. 다만,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알권리가 일정기간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충분히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3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법령 해석례 13-0423)

A.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고, 통지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이미 담당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인한 송부는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수령 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으로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후 해당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별도로 해당 정보를 공개 한다는 내용·기관의 직인·처리 담당자 등을 표시한 공문서의 시행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 035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

A.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 시 청구인에게 안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①"~일체" 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에게 법 제8조의 '정보목록' 검색을 안내하여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②법 제13조 제3항 및 영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우선 정보를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안내하고, ③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복사는 수수료 납부 후에 실시(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개에 응하지 않는 사례 주의) 등

Q036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8두3426)

Q037 문서 작성 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지

A. 공문서를 작성할 때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비공개 이익의 소멸 등으로 이전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현재는 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 시점에서 해당 문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Q038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접수 및 민원답변 리스트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A.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처분하였습니다.

A.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A.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전자파일 형태로 추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039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법 2016누41844)

A. 정보공개 시 그러한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040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해당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 해석례 09-0027)

A.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A.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Q 041 출퇴근 시간 등 정보공개청구

A.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042 공직자 메일에서 메일 목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A. 공직자 메일은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메일로서 메일 목록은 공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A. 현실적으로는 직무를 위해 주고받은 메일도 있는 반면, 사적인 안부메일 등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를 위해 직무상 메일 목록과 사적 안부 메일 목록을 구분 추출하기가 곤란하므로 공직자 메일 목록은 비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43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A. 정보공개법은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정보 이용상의 주관적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그 정보를 공개청구자의 요구대로 변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다만,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A. 자료추출이 가능하다고 본 예)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 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서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A. 예)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자료추출이 불가하다고 본 예) 국세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위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세청이 자신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 생산하여 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84)

044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계산

A. '21. 12. 23.부터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A. 따라서, 1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800원을, 1GB 초과 2GB 미만 파일의 경우에는 1,600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기준)에 다수의 공개 오디오·비디오 전자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출하면 됩니다.

(예시) 하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300MB 오디오 파일 1개, 500MB 비디오 파일 1개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파일의 용량이 총 800MB에 해당하므로 800원을 부과하면 됩니다.

045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 여부의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언론사 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이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감면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046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시 우편요금도 감면 대상인지

A.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편요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047 수수료 정산 시기

A. 보관한 수수료는 다다음주 월요일(14:00~16:00)에 각 이용기관에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예) (정산시기) 6.7(월). ~ 6.11.(금)에 결제한 수수료는 6.21(월)에 이용기관에 정산

A. 정보공개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청구 접수,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공개 처리한 후 수수료를 직접 정산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각 기관의 정산계좌는 PG사에서 관리) ※ PG사(Payment Gateway): 인터넷 소액결재 서비스 대행사

Q048 정보공개 일시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A.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의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049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산정

A.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USB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의 성격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050 사본 첫장 수수료 계산 등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A.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사본(B4 이하 종이출력물) 1장일 경우에도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 또한,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경우, 첫장(B4 이하) 250원은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문서에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종이문서 A4 1장 스캔과 종이문서 A4 9장 스캔+지움 ☞ 600원
(1장×50원/2) + (기본 250원 + 8장 400원) = 675원(75원 절사하고 600원 부과)

Q051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법령 해석례 13-0362)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Q052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 결정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다만, 권익위법 제39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송 및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참고

Q 053 다수의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A.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나,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해당 제3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한 번 더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따라서, 이의 신청인의 동일 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054 이의신청 기간(30일)의 계산

A.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합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한 날이 기준이고, 청구인이 서신으로 통지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수취일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Q055 이의신청 내용은 동일하나 청구인 또는 청구건이 다른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A.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제외하고 있는바,

A. 이는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하게 동일한 경우로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정보공개 및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Q&A

Q 056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A.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 그 공개 여부 및 내용과 범위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참고로 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도록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02179)된 사례가 있습니다.

Q 057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의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2014두38033)

A. 이 사건 보고서는 원고의 민원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만약 이와 같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이 사건 보고서는 당사자나 관련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그 안의 검토내용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058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정보공개청구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두15936)

A. 참고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출제의 시간·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 다만, 직접 출제방식의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059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점수 정보공개청구

A. 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면접 점수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 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60 국고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A.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A.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A. 아울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결정할 때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불복제기 안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Q 061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할 때에도 제6호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062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A. 공모 탈락자의 공개모집(점수표, 심사배점표 및 기준표)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공개모집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리고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Q063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정보공개청구

A.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정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Q06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 · 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065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A.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066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A. 위원회 명단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먼저 제6호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 최근의 위원명단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067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A. 청구자(임차인)가 공개 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68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청구

A.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82조의2에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시·군·구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의 해당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요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069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070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A. 특정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071 CCTV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

A.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A. 청구인 본인만이 촬영된 경우 본인에게 공개 가능할 것이나, 청구자 외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타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을 것이며, 마스킹 처리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Q072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A.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토지수용 동의 확인 관련 서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및 공람에 따른 수용 동의율 확인 관련 서류 일체로서, 사업 시행자인 ○○(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중 도시개발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토지 현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Q 0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A.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물건조서의 내용 및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 074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청구한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 내역은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075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인사발령 기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076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비공개가 가능한 대표 정보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Q077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A. 근무상황부에 포함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육아시간, 결근, 조퇴, 외출, 당직휴무, 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 등의 사유 중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연가, 공가 일수 등 일반적인 통계 수준은 공개 가능(단, 특정인의 연가 및 병가 일수 등은 통계 수준일지라도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

A.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의 경우는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078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A.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나, 판·검사는 '법관징계법' 제26조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Q079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A.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됨으로써 해당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됨으로써 준공 후 해당 건축시설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A.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8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정보공개청구

A.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A. 증빙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해당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고법 2001누17274)

Q 081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자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법제처 07-0253)하여야 할 것이며,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082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 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단서 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사익)를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A.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 받았다면 이는 청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Q083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A.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 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084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두1798)

A.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85 건축물 등의 도면 정보공개청구

A.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해당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면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해당 건축물의 경비, 보안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A.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086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근로자수 정보공개청구

A.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087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청구

A.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등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A. 다만,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 · 하도급 대비표에는 각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그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 할 것입니다.

Q088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A.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참조)

A.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는 등은 법인 등의 경우와 같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Q089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법령 해석례 06-0132)

A.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노동부 2005-16132)가 있습니다.

A.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090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의 범위

A.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7두1798)

A.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가 가능한 단서 조항 중 '가목'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며, '나목'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내역 등은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A. 참고로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091 단체협약 정보 공개 가능 여부

A. 노사간 체결된 개별 단체협약에는 임금수준, 각종 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사측으로서는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여러 사업장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각 사업장과의 협상이 비교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이 공개될 경우 타 업체와의 단체협상 등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105)

A. 단체협약서는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조활동, 단체교섭, 근로시간과 근무제도, 임금 및 퇴직금, 인사, 표창 및 징계,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공개 의견서에 반하여 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07528)

Q 092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A.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A.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령 해석례 06-0037)

A.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집행처별 세부 집행금액은 언론사 등의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10)

A. 따라서, 광고·홍보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청구내용,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발 행 일	2021. 11.
참조문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집필·편집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발 행 처	경상북도교육청

* 이 매뉴얼은 비매품이며, 매뉴얼에 담긴 내용 및 콘텐츠(그림, 도표)의 일부 또는 전체의 무단 복제 및 게재를 금합니다.